

## 요약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25단계 기간연장

### 1. 개요

- (적용기간) 2021.2.1.(월) ~ 2.14.(일) (2주간 적용)
  - 1일 평균 환자수(주간)가 2.5단계 기준(400명) 아래로 유지되면, 1주 후 단계조정 및 방역조치 완화 검토\*
  - \* 행정명령은 2주간 내리되, 1주 뒤 변동 가능성을 명시하여 조치
- (조치내용) 현 단계(2.5단계)를 적용하되 재확산 위험성과 설연휴 등을 고려하여 특별방역조치 강화 및 일부 방역수칙 개선·보완

### 2. 주요 조치사항

- (2주간 설 연휴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특별방역조치 강화)
  - ① (모임·행사)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 인천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2020.12.23.~2021.1.3.) 조치는 기간만료되어 이후 기간(1.4 ~ 2.14)은 정부방침 적용(방역수칙 및 위반조치 등)

- \* 설 연휴를 포함하여 직계가족도 예외 불인정 (함께 사는 가족만 예외)
- ② (여행자제) 숙박시설의 객실 수 2β 이내 예약 제한 및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유지
  - \*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③ (설연휴) 귀성·여행 자제, 고속도로 휴게소 취식 금지, 온라인성묘 등 설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연휴기간 방역 긴장감 유지
- ④ (종교시설) 종교 행사에 대한 방역 수칙 철저 준수 요청 및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 TCS 국제학교, IEM 국제학교, CAS 기독교방과후 학교 등
  -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자체 안내(1.26), 지자체의 행정명령 및 현장점검 강화
  - 정규 종교시설 외에 기도원, 수련원 등 사각지대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및 방역수칙 관리 철저 (숙박, 식사, 소모임 금지)
- ⑤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 간병인 대상 PCR 선제검사 의무화 (요양병원·요양시설 주1회 이상)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 실시
- ⑥ (선제검사유지) 숨어있는 감염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임시선별 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 계속 유지

- (일부 2.5단계 이상의 방역수칙 개선 및 보완)

- ① (공연장·영화관) 사람 간 좌석 띄우기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로 변경
  - \* 집단감염 사례가 없고 위험도가 낮은 점 고려하여 기준 현실화
- ② (실내체육시설) 수도권에서 샤워실 운영 금지\* → 샤워실 운영을 허용하되 한 칸 띄우기 실시, 탈의실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조
  - \* 2.5단계 방역수칙에 없는 특별조치로 환자 감소에 따른 조정 필요
- ③ (파티룸) 집합금지 해제, 21시 이후 운영금지 등
- ④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하되, 이동량 감소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 방역수칙 유지

- 완화 불가능한 조치

- 거리두기 단계 조정
-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제한중단 조치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및 홀덤펍 집합금지

### 3. 방역조치 책임성 제고

- 고발조치(벌금) 및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및 이용자
- 구상권 청구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산 시

#### ※ (개편) 단계별 추진경과

- ▲(1단계) 2020. 11. 7. ~ 별도 해제 시
- ▲(1.5단계) 2020. 11. 23. ~ 12. 6. ▲식당·카페 조기시행(11. 21-12. 6) ▲ 1.5단계 격상 제외(강화군·웅진군)
- ▲(2단계) 2020. 11. 24. ~ 12. 7. (2주간)
- ▲(2.5단계) 2020. 12. 8. ~ 12. 28. (3주간)
  - (추가 1) 겨울 스포츠시설 일반관리시설 지정 및 2.5단계 : 12. 11.(금) 0시 ~ 12. 28.(월) 24시
  - (추가 2) 인천시 방역강화 조치 : 12. 13.(일) ~ 별도 해제 시
  - (추가 3) 거리두기 실천 제고를 위한 방역지침 의무화 등 추가 : 12. 19.(토) 0시~ 12. 28.(월) 24시
  - (추가 4)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 12. 24.(목) 0시 ~ 1. 3.(일) 24시
- ▲(2.5단계 연장) 2020. 12. 29. ~ 2021. 1. 31. (약 1달여 간)



#### 4.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2021.2.1.~2.14.) 방역조치(요약표)

##### ※ 유의사항

- 1)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2) **아래 표는 요약표**이므로 **각 유형별 세부지침 준수(참고 1. ~ 12.)**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b>① 모임·행사</b>	
사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b></li> <li>*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li> <li>- <b>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b></li> <li>※ <b>인천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2020.12.23.~2021. 1.3.) 조치는 기간만료되어 이후 기간(1.4~ 2.14)은 정부방침 적용(방역수칙 및 위반조치 등)</b></li> </ul>
기타 모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li> <li>*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li> <li>▶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li> <li><b>&lt;인천시 조정&gt;</b></li> <li>▲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2020. 11. 23. ~ 별도 해제 시)</li> <li>▲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2020. 11. 24. ~ 별도 해제 시)</li> </ul>
<b>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b>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li> <li>▶ <b>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b></li> <li>▶ <b>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b></li>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ul>
노래연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b>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b></li>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li>▶ <b>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b></li> </ul>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실내 스탠딩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li> <li>▶ <b>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b></li> <li>▶ <b>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b></li> </ul>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b></li> <li>▶ <b>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b></li> <li>▶ <b>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b></li> <li>▶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li> </ul>
실내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b>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b></li> <li>*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li> <li>▶ <b>샤워실 이용 시 한 칸 띄워 이용, 탈의실 내 마스크 착용</b></li> <li>▶ <b>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b></li> <li>▶ <b>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b></li>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ul>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b></li> <li>▶ <b>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b></li> <li>▶ <b>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b></li> <li>▶ <b>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b></li> <li>▶ <b>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b></li> <li>▶ <b>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b></li> <li>▶ <b>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b></li> </ul>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li>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li>▶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내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내 4명까지 허용</li> <li>▶ 숙박시설 운영 금지</li> <li>*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li> </ul>
직업훈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li>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ul>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li> </ul>
영화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어 앉기</li> </ul>
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어 앉기</li> </ul>
PC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li> <li>▶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ul>
오락실·멀티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ul>
독서실·스터디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li> <li>▶ 단체룸은 수용가능 인원의 50%로 인원 제한</li> </ul>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놀이공원·워터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li> </ul>
이·미용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li> </ul>
백화점·대형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li> <li>▶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li> <li>▶ 집객행사 금지</li> <li>▶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li>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ul>
마트·상점·백화점 (30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시식코너 운영중단</li> <li>▶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li> </ul>
<b>③ 기타 다중이용시설</b>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내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내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li> <li>▶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li> <li>▶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li> <li>▶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li> <li>▶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li> </ul>
국공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li> <li>▶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li> <li>▶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li> <li><b>&lt;인천시 조정&gt;</b></li> <li>- 월미바다열차 운행중단 (2020. 12. 13. ~ 별도 해제 시)</li> </ul>
사회복지이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li> <li><b>&lt;인천시 조정&gt;</b></li> <li>- 감염병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부 지침보다 보수적인 인천형 운영기준 설정</li> <li>※ 단,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 돌봄 등은 필수 제공 조치</li> </ul>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b>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b>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대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b>&lt;인천시 조정&gt;</b> - 인천도시철도 1·2호선 30% 감축운행(2020. 12. 8. ~ 별도 해제 시)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등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 <b>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가능</b>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5. 우리 시 행정조치 현황

현행유지	<b>1)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b> - (적용기간) 2020. 8. 26. 0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1. / (시행) 2020. 10. 12. / 과태료(사업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b>2)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b> - (과태료 처분 시행기간) 2020. 11. 13. 0시 ~ 별도 해제 시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b>※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b> - (적용기간) 2020. 8. 20. 15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2. / (시행) 2020. 10. 13. / (과태료) 10만원 이하 <b>※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b> - (적용기간) 2020. 10. 14. 0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1. 12. 24시 / (과태료 시행) 2020. 11. 13. 0시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조치해제	<b>3)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b> ※ 집회 및 사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인 집회 - (적용기간) 2020. 11. 24. 0시 ~ 별도 해제 시 / (벌금) 300만원 이하 <b>※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b> - (적용기간) 2020. 8. 24. 0시 ~ 10. 11. 24시 / (벌금) 300만원 이하 <b>※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b> - (적용기간) 2020. 10. 13. 0시 ~ 별도 해제 시 / (벌금) 300만원 이하
	<b>4) 인천도사합도 심야시간대(21시-01시) 30% 감축운행</b> - (적용기간) 2020. 12. 8. ~ 별도 해제 시 <b>5)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우리 시 방역조치 강화 (2.5단계)</b> ① 월미바다열차 운행중단(2020. 12. 13~ 별도 해제 시) ② 인천대공원·월미공원 폐쇄(2020. 12. 15. ~ 2021. 1. 18.)(기간만료) ③ 인천시 공공기관 재택근무 등 대상자 1/2 의무시행(2020. 12. 15. ~ 2021. 1. 18.)(기간만료) ④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강력 권고(2020. 11. 23. ~ 별도 해제 시) ※ 유·초·중·고 원격수업 전환(교육청 2020. 12. 15. ~ 별도 안내 시)
	<b>6) 인천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기간만료)</b> - (적용기간) 2020. 12. 23(수) 0시 ~ 2021. 1. 3(일) 24시 / (벌금) 추첨자 및 참여자 300만원 이하 - (적용예외) 공적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시험(분할된 공간 50인 미만) / 결혼식 및 장례식(2.5단계 적용, 50인 미만) / 기타 일상적 가정생활(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공동체의 일상적 활동) 등 <b>※ 정부방침 : 전국 공통(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 4. ~ 2. 14.)</b>
	<b>7) 인천시 노인요양시설 등의 방역지침 행정조치</b> ※ 시 노인정책과-21375(2020.12.30.)호 - (적용기간) 2020. 12. 31.(목) ~ 상황 종료 시 / 과태료(책임자·종사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b>※ 인천시 소재 편의점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해제 2020. 9. 14. 0시</b> - (과태료) 2020. 9. 3. 0시 ~ 9. 13. 24시

## 6. 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현황

구분	대상 시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b>중점관리시설(9종)</b>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탈출 등 흥보관, 식당·카페 <b>※ 다란 식당·카페 12. 7.부터 과태료 부과</b> ▶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출입명부 의무화 (전자 또는 수기명부 선택)	▶ <b>일반관리시설(14종)</b>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특목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b>겨울 스포츠시설</b> ▶ <b>중교시설</b> <b>※ 일반관리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출입명부 의무 시설 제외</b>



**참고 1** **집합·모임·행사 의무화 되는 방역지침**

□ 사적 모임

①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적용 예외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 제외,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모임·행사 인원 제한 조치(수도권 50명 미만) 적용

② 사적 모임을 제외한, 5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써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의원회, 방송제작·송출 등

<사적 모임> 참석자 수칙

-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집합·모임·행사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관련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li> <li>▶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li> </ul> </li> <li>▶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마스크 착용</li> <li>▶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관련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li> <li>▶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li> </ul> </li> <li>▶ 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50인 기준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마스크 착용</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참고 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관련 Q&A

**1** 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②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③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 모임·행사 인원 제한(수도권 49명까지,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미적용

##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2 가족 모임 관련

**Q7.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함



**Q8.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9.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10.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Q12.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3 직장 관련

**Q13.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4.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15.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6.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뷔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Q18.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20.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21.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5 기타

**Q22.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Q23.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시 4명까지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24.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요?**

-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시 제외

**Q25.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Q26.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27.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인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 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참고 3**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

중점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li> <li>-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li> <li>*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li> </ul> </li> <li>■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li> <li>■ 방역관리자 지정</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li> <li>■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li> <li>■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li> <li>■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li> <li>■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li> <li>■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ul> </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li> <li>■ 마스크 착용</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노래부르기 금지</li> <li>■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li> <li>■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li> </ul>
노래연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li> <li>-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li> <li>*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li> </ul> </li> <li>■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li> <li>■ 마스크 착용</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li> <li>■ 이용인원 제한 준수</li> </ul>



증점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li> <li>■ 방역관리자 지정</li> <li>■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li> <li>■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li> <li>■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li>■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코인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li> </ul>	<p>(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인노래방은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li> <li>■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li> </ul>
실내 스탠딩 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li> <li>■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li> <li>■ 방역관리자 지정</li> <li>■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li> <li>■ 마스크 착용</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li> <li>■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li> <li>■ 스탠딩 관람 금지, 배치된 좌석(2m, 최소 1m 간격)에 착석하여 공연 관람</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li> </ul>

증점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섭취하지 않도록 안내</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ul>	
파티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li> <li>■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li> <li>■ 방역관리자 지정</li> <li>■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li> <li>■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li> <li>■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 (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li>■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li> <li>■ 마스크 착용</li> <li>■ 이용인원 제한 준수 (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li> <li>■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li> <li>■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li> <li>■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li> </ul>



**참고 4**

**학원 등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포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p>▶ <b>출입자 명부 관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관련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p>▶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p> <p>▶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p> <p>▶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p> <p>▶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li> </ul> <p>▶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p> <p>▶ 시설허가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ul> <p>▶ <b>관악기·노래 교습 금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하나의 공간(실) 내 1:1 교습시 운영 허용하되, 1~2M 거리 유지하면서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내 4인까지 허용</li> </ul> <p>▶ <b>숙박시설 운영 금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li> </ul> <p>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소前) 2주간 예방관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신속항원 검사 혹은 PCR 결과 입소 시 제출</li> </ul>	<p>▶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p> <p>▶ <b>마스크 착용</b></p> <p>▶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li> </ul> <p>▶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p> <p>▶ 시설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준수</p> <p>▶ <b>관악기·노래 교습 금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하나의 공간(실) 내 1:1 교습시 운영 허용하되, 1~2M 거리 유지하면서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내 4인까지 허용</li> </ul> <p>▶ <b>숙박시설 이용 금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li> <li>-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li> </ul> <p>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신속항원검사 혹은 PCR 결과 제출</li> <li>-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신속항원검사 혹은 PCR 결과 제출</li> </ul> <p>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p>	
--	--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평생교육기관(문화센터 등)**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p>▶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내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내 4명까지 허용</p>	<p>▶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하나의 공간(실) 내 1:1 교습시 운영 허용하되, 1~2M 거리 유지하면서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내 4인까지 허용</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참고 5 식당·카페 의무화 방역지침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li> <li>-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li> <li>*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li> <li>▶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li> <li>▶ 방역관리자 지정</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li> <li>▶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li> <li>▶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li> <li>▶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 신고면적 50㎡ 이상)</li> <li>▶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li> <li>▶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li> <li>▶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li> <li>▶ 마스크 착용</li> <li>▶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li> <li>▶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li> <li>▶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li> <li>▶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li> </ul>

## 참고 6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관련 FAQ

### Q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식당, 시설 면적 50㎡ 이상인 경우)
- 여기에서 '테이블'이란 앉을 수 있는 인원 수나 모양 등과는 관계 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탁자를 의미하며, 테이블 및 이용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Q2.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가림막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 칸막이·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나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 차단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가능한 경우 설치 권장

**Q3. 한 매장 내에서 일부 공간은 테이블 간 1m를 띄우고, 일부 공간은 좌석/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나요?**

- 그러한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됨
- 예를 들어, 룸(room)과 홀(hall)이 같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 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음

**Q4. 식당·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건가요?**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에도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이 의무화됨

**참고 7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격렬한 GX 프로그램은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춤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li> </ul> </li> <li>▶ 샤워실 이용 시 한 칸 띄우기, 탈의실 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 준수 안내</li> <li>▶ 이용인원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li>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ul> </li> <li>▶ 마스크 착용</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li> <li>▶ 샤워실 이용 시 한 칸 띄우기, 탈의실 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의실 내 마스크 착용 의무</li> </ul> </li> <li>▶ 21시에서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li> <li>▶ 격렬한 GX 프로그램 참여는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춤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li> </ul> </li> <li>▶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ul> </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스키하우스 등 실내 시설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li> <li>▶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li> <li>▶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li> </ul> </li> <li>▶ 타 지역-시설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li> <li>▶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li> <li>▶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li> <li>▶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마스크 착용</li> <li>▶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준수</li> <li>▶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준수</li> <li>▶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준수</li> <li>▶ 타 지역-시설 간 셔틀버스 이용 금지</li> <li>▶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참여 자제 권고</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결혼식장, 장례식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개별 결혼식·장례식 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마스크 착용</li> <li>▶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결혼식장 및 결혼식장 뷔페 관련 추가 안내

- 개별 결혼식당 참석자 50인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결혼식에 초대받아 예식홀 또는 뷔페를 이용하는 모든 하객의 수가 50인 미만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 인원 산정 시 주최 측(신랑·신부)은 포함,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
- 여성가족부에서 9월 10일에 안내한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에 따르면, 결혼식을 할 때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인 미만의 인원(총인원 기준)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이동 또는 접촉이 없어야 합니다. 예식홀에서 식에 참석한 사람이 뷔페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나의 결혼식당 예식홀 또는 뷔페를 이용하는 하객의 수를 모두 합쳐 50인 미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 다만,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각 공간에서 참석하는 인원들 간에 동선이 겹치지 않는 등 접촉이 아예 없는 경우 49인씩으로 나누어 개최가 가능합니다.



## □ 직업훈련기관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 거주,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li> </ul> </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시설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 거주,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마스크 착용</li> <li>▶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li> </ul> </li> <li>▶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li> <li>▶ 시설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준수</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 목욕장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 거주,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ul> </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li> <li>▶ 사우나·한증막·찜질 시설 운영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 거주,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마스크 착용</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li> <li>▶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 준수</li> <li>▶ 사우나·한증막·찜질 시설 이용 금지</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 영화관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 거주,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 관리</li> </ul> </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 거주,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마스크 착용</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li> <li>▶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어 앉기</li> <li>▶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 공연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 관리</li> </ul> </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ul> </li> <li>▶ 마스크 착용</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li> <li>▶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어 앉기</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 PC방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li> </ul> </li> <li>▶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ul> </li> <li>▶ 마스크 착용</li> <li>▶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li> </ul> </li> <li>▶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 오락실·멀티방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li> <li>*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ul> </li> <li>▶ 마스크 착용</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li> <li>▶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li> <li>▶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 독서실·스터디카페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li> </ul> </li> <li>▶ 단체룸은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ul> </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ul> </li> <li>▶ 마스크 착용</li> <li>▶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li> </ul> </li> <li>▶ 단체룸은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준수</li> <li>▶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놀이공원·위티파크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관련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마스크 착용</li> <li>▶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준수</li> <li>▶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이·미용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관련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li> <li>*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마스크 착용</li> <li>▶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li> <li>▶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백화점·대형마트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이용자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li> <li>▶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li> <li>▶ 집객행사 금지</li> <li>▶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스크 착용</li> <li>▶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협조</li> <li>▶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li> <li>▶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의 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시식코너 운영 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스크 착용</li> <li>▶ 시식코너 이용 금지</li> <li>▶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참고 8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 (대상) 아래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li> <li>*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li> <li>▶ <b>전체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b></li> <li>▶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li> <li>*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li> <li>▶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li> <li>▶ 로비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li> <li>▶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li> <li>▶ 전체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준수</li> <li>▶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이용 금지</li> <li>▶ 로비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li> </ul>

-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참고 9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b>이용자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가능</b></li> <li>* 단, 100석 미만의 경우 10명 이내 참여 가능</li> <li>- <b>이용자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안내</b></li> <li>- <b>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b></li> <li>■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li> <li>*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b>이용자간 2m 이상 유지, 면적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가능</b></li> <li>* 단, 100석 미만의 경우 10명 이내 참여 가능</li> <li>- <b>이용자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한 곳만 이용</b></li> <li>■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li> <li>*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li> </ul>
<p>※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b>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숙박포함)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b></li> <li>■ <b>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b>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b>출입자 명부 관리</b></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li> <li>■ <b>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b></li> <li>■ <b>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b></li> <li>■ <b>시설 내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b></li> <li>■ <b>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b></li> <li>■ <b>방역관리자 지정</b></li> </ul>	<p>※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b>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숙박포함) 참석 및 식사 금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b></li> <li>■ <b>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b>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b>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b>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b>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b></li> <li>■ <b>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b></li> <li>■ <b>마스크 착용</b></li> <li>■ <b>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b></li> </ul>

-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참고 10**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FAQ**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 예배(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금지
    -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 \*\*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연주만 가능

**Q3.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 (거리두기 2단계)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 ▲ (거리두기 2.5단계)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1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 모두 금지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 모두 금지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 \* (2.5단계) 49명 참여 가능, (2단계) 99명 참여 가능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1단계의 경우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자체 권고되며, 1.5 단계 이상에서는 금지됨

**Q10.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참고 11 고위험사업장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콜센터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1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li> <li>▶ 방역관리자 지정</li> <li>▶ 사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또는 칸막이 설치</li> </ul> <p><small>* 휴게실·휴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li> <li>▶ 마스크 착용</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유통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1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li> <li>▶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li> <li>▶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li> <li>▶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li> </ul> <p><small>* 휴게실·휴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li> <li>▶ 마스크 착용</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참고 12 수도권 대중교통시설 의무화 되는 방역지침

○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이용자 수칙

- ▶ 마스크 착용
-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참고 13 시설면적 기준 방역수칙

○ 시설 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이용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할 경우, 200평 규모 시설은 동시에 약 80명, 300평 규모 시설은 약 120명 수용 가능

○ 시설면적 대비 수용가능 인원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실내체육시설 헬스장)>

시설면적(평/㎡)		20평	30평	50평	100평	200평	300평
		66.11㎡	99.17㎡	165.28㎡	330.57㎡	661.15㎡	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명/ 8㎡	8.26명	12.39명	20.66명	41.32명	82.64명	123.96명
	1명/ 4㎡	16.52명	24.79명	41.32명	82.64명	165.28명	247.93명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실내체육시설 당구장)>

시설면적(평/㎡)		48평	52평	78평	비고
		158.67㎡	171.90㎡	257.85㎡	
설치가능 당구대 수		7대	8대	11대	당구대(1대당)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명/8㎡	19.83명	21.48명	32.23명	최대수용인원:
	당구대당 full정원시	28명	32명	44명	4명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노래연습장)>

구분	면적(평)	면적(㎡)	방수	1.5단계		2단계, 2.5단계	
				1명/6㎡	방별 평균인원	1명/8㎡	방별 평균인원
노래 연습장	30	99.2	4	16.5	4.1	12.4	3.1
	35	114	4	19.0	4.8	14.3	3.6
	40	132.2	4	22.0	5.5	16.5	4.1
	40	132.2	7	22.0	3.1	16.5	2.4
	55	181.8	5	30.3	6.1	22.7	4.5
	60	198.3	7	33.1	4.7	24.8	3.5
	65	214.9	9	35.8	4.0	26.9	3.0
	70	231.4	8	38.6	4.8	28.9	3.6
	93	307.4	15	51.2	3.4	38.4	2.6
단계별 룸별 평균인원 수				1.5단계 4.5인		2단계, 2.5단계 3.4인	
코인	51	168.6	20	28.1	1.4	21.1	1.1
노래방	80	264.5	23	44.1	1.9	33.1	1.4
단계별 룸별 평균인원 수				1.5단계 1.7인		2단계, 2.5단계 1.3인	

